

# 정 관

## 동부건설

### 제1장 총칙

제1조 (상호) 이 회사는 동부건설라 한다.

제2조 (목적)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종합건설업
2.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

제3조 (본점소재지) 이 회사의 본점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코레이트타워에 둔다.

제4조 (공고방법)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.

### 제2장 주식

제5조 (발행예정주식총수)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67,635,558주로 한다.

제6조 (1주의 금액)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5,000원으로 한다.

제7조 (설립시 발행주식) 이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33,817,779주로 한다.

### 제3장 이사회

제8조 (이사의 수)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.

제9조 (이사의 임기)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.

제10조 (대표이사)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

### 부칙

제1조 이 정관은 1969-01-24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설립시 자본금은 169,088,895,000원으로 한다.